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나533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표현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3172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공동피고 C와 피고 사이에 2020. 9.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98,367,9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98,367,9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각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바꾸고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한 점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바꾸는 부분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C’을 모두 ‘제1심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제1심공동피고 C’으로 각 고치고, ‘피고 D’을 모두 ‘피고’로 바꾼다.

‘피고 회사’를 ‘제1심공동피고 회사’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6행의 ‘증여계약’을 ‘증여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 위 보험으로 인한”을 “위 보험으로 보증한”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8행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해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를 “제1심공동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위 대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제1심공동피고 C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대위변제한 사실은”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를 “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을 가진 이 사건 증여계약이”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9행의 “384,807,742원을”을 “389,339,331원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8행의 “금액이다.”를 “금액이다(아래에서 보듯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채무를 피고 역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잔액 약 3억 9,700만 원의 1/2인 약 1억 9,850만 원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한 주식회사 G 근저당권채무액 약 1억 7,150만 원을 비교해보더라도, 2,700여만 원 정도의 차이만이 날 따름인바, 이혼 성립 이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터 잡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큰 점, 제1심공동피고 C과의 이혼사건에서 피고는 양육비 지급액을 사건 본인 1인당 월 7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제1심공동피고 C이 제1심공동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채무는 위 C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제1심공동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일뿐,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든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사실관계는 그 채무 명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인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소극재산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제1심공동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01,200,000원(이후 263,1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한 근저당권이 2015. 3. 5.에, ② 채무자 제1심공동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19. 3. 18.에, ③ 채무자 제1심공동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20. 7. 17.에 각 설정된 사실, 피고는 2020. 10. 8. 위 ①번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7,813,880원과 위 ②번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443,930원 그리고 위 ③번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1,081,521원을 각 상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2020. 11. 16. 접수, 청구금액 123,911,168원), 신용보증기금(2020. 11. 19. 접수, 청구금액 80,000,000원 및 2020. 12. 1. 접수 청구금액 63,750,000원), Q 주식회사(2020. 12. 1. 접수, 청구금액 79,432,633원)를 각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마쳐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F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주택자금대출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의 G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는 채무자가 모두 제1심공동피고 회사이고, 중소기업은행 등 가압류권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고의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한 권리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바(원고도 이들이 모두 원고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채무는 앞서 가.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소극재산이 아니라 제1심공동피고 C의 단독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웅기, 판사 양은상, 판사 김양훈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I, J, K에 있는
L건물 M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N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7층 P호 84.90㎡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I 대 16768.2㎡
2. 서울특별시 중랑구 J 대 13㎡
3. 서울특별시 중랑구 K 대 14.8㎡

대지권의종류 : 1, 2, 3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6796.00분의 37.23

